

회의록

안건	○ 보고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1-1호. 2026년 제7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1-2호. 2026년 제7차 코로-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○ 심의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1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10140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2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9339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8883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4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2-19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5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8619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6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3557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7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2746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8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8057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9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3625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8-2-10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26-577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개최일시	2026년 7월 27일(월요일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장소	영상회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출석위원	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 출석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회의내용	<table><tr><th>의안번호</th><th>결정사항</th><th>세부내용</th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1-1호</td><td>원안 의결</td><td>-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1-2호</td><td>수정 의결</td><td>심의·의결서 문구 일부 수정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1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1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2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2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3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3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4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4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5호</td><td>일부 보상</td><td>붙임5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6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6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7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7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8호</td><td>기각</td><td>붙임8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9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9 참조</td></tr><tr><td>제2026-재심-8-2-10호</td><td>보상</td><td>붙임10 참조</td></tr></table>	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	제2026-재심-8-1-1호	원안 의결	-	제2026-재심-8-1-2호	수정 의결	심의·의결서 문구 일부 수정	제2026-재심-8-2-1호	보상	붙임1 참조	제2026-재심-8-2-2호	보상	붙임2 참조	제2026-재심-8-2-3호	보상	붙임3 참조	제2026-재심-8-2-4호	보상	붙임4 참조	제2026-재심-8-2-5호	일부 보상	붙임5 참조	제2026-재심-8-2-6호	보상	붙임6 참조	제2026-재심-8-2-7호	보상	붙임7 참조	제2026-재심-8-2-8호	기각	붙임8 참조	제2026-재심-8-2-9호	보상	붙임9 참조	제2026-재심-8-2-10호	보상	붙임10 참조
	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1-1호	원안 의결	-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1-2호	수정 의결	심의·의결서 문구 일부 수정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1호	보상	붙임1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2호	보상	붙임2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3호	보상	붙임3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4호	보상	붙임4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5호	일부 보상	붙임5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6호	보상	붙임6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7호	보상	붙임7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8호	기각	붙임8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9호	보상	붙임9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제2026-재심-8-2-10호	보상	붙임10 참조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8회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26세/화이자 2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기존 관련성 의심질환 진료비 지원 시 제외된 비급여 약제인 리포라제주는 안면신경마비 치료에 필수적인 약제라고 보기는 어려우나, 안면신경마비 초기 부종 감소를 위한 보조적 치료제로 사용될 수 있으며, 피접종인이 자의적으로 선택하였다고보다는 의료기관의 권고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56세/화이자 1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안면신경마비는 백신 접종 28일 뒤 발생하였으나 문헌에서 제시된 발생 시기 범위 내에 해당하여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고, 기존에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진료비를 지원받은 사례인 점을 고려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46세/화이자 3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안면신경마비는 예방접종 후 이틀 뒤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고, 기존에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지원 결정된 사례인 점을 고려할 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- 삼차신경통과 관련하여 문헌상 근거가 일정 부분 제시되어 있고, 안면신경마비와 삼차신경통 관련 진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, 함께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61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피접종인의 의무기록상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치료가 지속된 점과 일부 호전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 치료를 이어간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하는 것이 타당
- 중간에 진료기록이 없는 기간이 있으나, 해당 기간 중 다른 원인에 의해 새로운 증상이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진료기록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신청된 진료비를 보상하는 데 동의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66세/모더나 3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안면신경마비가 완전히 호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경과가 확인되므로, 안면신경마비 관련 진료에 한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- 마이봄샘 기능장애 등 안과 질환은 발생 시기와, 다른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안면신경마비의 합병증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안면신경마비 관련 진료와 구분할 필요가 있음
- 경추통 등 근골격계 질환은 제외하고, 한의원 진료 중 안면신경마비 치료 관련 진료비만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안면신경마비 : 보상, 그 외 질환 : 기각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000/남성/53세/화이자 3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접종 후 증상 발생 시기가 고려 가능한 범위에 있고, 안면신경마비와 이명은 관련 기전과 사례 보고가 제시되어 있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
- 백신 접종 후 수두대상포진바이러스(VZV) 재활성화가 가능하며, 이로 인해 램지헌트증후군이 생긴 경우 동반될 수 있는 증상인 안면신경마비와 이명을 모두 포괄하여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28세/화이자 4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예방접종 이후 대상포진 바이러스 활성화에 따른 안면신경마비 발생은 시간적 개연성과 의학적 근거를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, 기존 안면신경마비 병력과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
- 편마비는 객관적인 검사상 명확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았으나,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 및 치료 과정은 안면신경마비 및 대상포진 관련 진료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
- 뇌척수액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항바이러스제 투여 후 안면신경마비 증상이 뚜렷하게 호전된 임상 경과를 고려할 때, 접종 후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재활성화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71세/모더나 3차/안면신경마비 등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안면신경마비는 백신 접종 85일 후 발생하여 관련 연구 및 문헌에서 제시된 발생 시기와 비교할 때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, 시간차를 확대하더라도 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지나치게 늦은 것으로 판단됨
-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이 다양하여 접종과 증상 발생 사이에 다른 감염 등의 원인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, 면역반응이나 바이러스 재활성화로 설명하기에는 85일의 간격이 지나치게 길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60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안면신경마비, 발진·가려움 등 피부병변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안면신경마비는 백신 접종 약 60일 후 발생하였으나, 접종 후 발생한 피부 염증 등 면역학적 변화가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자문 의견을 고려할 때 시간적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,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- 피부병변은 예방접종 이후 새롭게 발생하여 악화와 완화를 반복하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경과가 확인되고,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78세/화이자 3차/두드러기 등 피부질환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예방접종 다음 날 전신 두드러기가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며, 예방접종에 따른 이상반응으로 볼 수 있음
- 접종 전 피부질환 병력이 있었다 하더라도, 예방접종 이후 바로 다음 날 전신 증상이 발생한 경과를 고려하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함
- 피해보상 신청된 피부질환은 지속 기간이 다소 길더라도 예방접종 후 발생한 임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보상하는 것이 적절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